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추복성, 임만재 의원
3. 개정이유

○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계획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결과 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히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제4조)

-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총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대학교수·법조인·연수전문가 3명, 언론인·시민사회대표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구체화(안제6조)**

-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별표)를 마련하여 심사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연수 제한사항 신설(안제9조의2)**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명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연수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연수 제한 가능

○ **사후관리 강화(안제10조)**

- 공무국외연수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5.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추 복 성 의원)

발 의 자	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발의년월일	2019. 3. 28.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호 어느 하나”를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외출장”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외여행하는”을 “국외연수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제2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국외여행”을 “국외연수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여행허가)”를 “(연수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연수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의장에게 신청”을 “공무국외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자”를 “공무국외연수자”로, “7인”을 “9명”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위원 중”을 “민간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원”을 “의원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학교수·법조인·연수전문가 등 3명

제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언론인·시민사회대표 등 5명

제5조제1항 본문 중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수의 필요성과 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국과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과 연수경비의 적정성

제6조제1항제4호 중 “국외여행과”를 “국외연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3”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작

성하여 비치한다”를 “작성 후 옥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여행계획서 제출 및 제안)”을 “(연수계획서 제출 및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연수를”로, “20일전”을 “30일전”으로, “여행계획서를”을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로, “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여행계획을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연수계획을 제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무국외연수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연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

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여행보고서등 제출 및 공개)”를 “(연수보고서등 제출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연수를”로, “30일”을 “15일”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연수”로, “의장은 제출 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연수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국외연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연수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의원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공무국외여행을”을 “공무국외연수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연수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연수의 필요성	1 공무국외연수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연수자의 적합성	1. 연수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연수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연수에 포함되었는가?		
	3. 연수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연수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연수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연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연수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연수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연수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연수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연수 신청서(제3조 관련)

<table>
<tr><td>연수목적</td><td colspan="6"></td></tr>
<tr><td>공무국외
연수범위</td><td colspan="6"></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6">20 . . ~ . (일간)</td></tr>
<tr><td>연 수 국</td><td colspan="6"></td></tr>
<tr><td>주요활동
내 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6">연 수 자</td><td rowspan="2">소속위원회</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성 별</td><td rowspan="2">연 령</td><td colspan="2">연 수 경 비</td></tr>
<tr><td>금 액(천원)</td><td>부담기관</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국외여비
자부담</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상기와 같이 공무국외연수을 신청합니다.

20 . . .

연수자(대표) 의원 (인)

옥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연수 심사결과서(제7조 관련)

수　　신 : 옥천군의회 의장

<table>
<tr><td>연수목적</td><td colspan="5"></td></tr>
<tr><td>연수동기</td><td colspan="5"></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5"></td></tr>
<tr><td>연 수 국</td><td colspan="5"></td></tr>
<tr><td>주　　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연 수 자</td><td>소속위원회</td><td>성명</td><td>성별</td><td>연령</td><td>연수경비</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사·의결 결과를 통보 합니다.

붙 임 : 공무국외연수 심사의결서 1부.　끝.

20 년　　월　　일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td></tr>
</table>

공무국외연수 심사 의결서

<table>
<tr><td>연수목적</td><td colspan="6"></td></tr>
<tr><td>연수동기
및 배경</td><td colspan="6"></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6"></td></tr>
<tr><td>연 수 국</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연 수 자</td><td rowspan="2">소속위원회</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연령</td><td colspan="2">심사결과</td></tr>
<tr><td>가(可)</td><td>부(不)</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옥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옥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연수계획서(제9조 관련)

1. 연수개요

<table>
<tr><td>연수목적</td><td colspan="7"></td></tr>
<tr><td>연수동기
및 내용</td><td colspan="7"></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7">. . . ~ . . .(일간)</td></tr>
<tr><td>연 수 국</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6">연 수 자</td><td rowspan="2">소속</td><td rowspan="2">직급</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연령</td><td colspan="2">연 수 경 비</td></tr>
<tr><td>금 액</td><td>부담기관</td></tr>
<tr><td>계</td><td></td><td>명</td><td></td><td></td><td>천원</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옥천				
		옥천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연수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연수효과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작성요령(제10조 관련)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연 수 국 :
2. 연수목적 :
3. 연수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연수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국외연수----------.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옥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공무국외연수----------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옥천군수가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4. -------- 국외출장----------
5.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5. ---------- 국외연수를 하는 ---
<신 설>	6.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옥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에 따	7. ----------

라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 국외연수를 ------
제3조(여행허가)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연수허가) ① 공무국외연수를 ---------- 공무국외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허가 하여야 한다.	② ---------- 공무국외연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비율이 1/2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공무국외연수자-------- 9명 --------.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

	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과 ---------- 민간위원 중-------.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
1. 의장이 추천한 의원	1. ---------- 의원 1명
2. 대학교수·주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2. 대학교수·법조인·연수전문가 등 3명
<신 설>	3. 언론인·시민사회대표 등 5명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와 기준)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6조(심사와 기준) ① -------- 공무국외연수---------.
1. 여행목적과 여행국·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연수의 필요성과 연수자의 적합성
2. 여행인원수와 여행자 구성의 적합성	2. 연수국과 연수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과 여행경	3. 연수기간의 타당성과 연수경

비의 적정성 4. 그 밖의 국외여행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여행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한다.	비의 적정성 4. ------ 국외연수와 ------ ② 제1항의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 공무국외연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3분의 2 이상---------.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팀장이 된다.	④ ---------- 1명----------.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⑦ ---------- 작성 후 옥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및 제안)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출국 2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여행계획을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할 수 있다.	제9조(연수계획서 제출 및 제안) ① 공무국외연수를 ---------- 30일전----------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 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연수계획을 제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공무국외연수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연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등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출 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	제10조(연수보고서등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연수를 ---------- 15일 ---------- 공무국외연수 ----------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연수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심사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국외연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연수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의원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 공무국외연수를 ---------- ---------- ---------- ---------- ---.

관 련 자 료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안내

1. 추진배경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 필요

2.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개정내용

1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2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정수를 시·도 의회는 9인 이상,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3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4 정보공개 확대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5 사후관리 강화

○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 첨부(별지 2)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4. 별도 권고사항

○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심사**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임의로 심사대상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삭제 조치

5. 조치사항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적절히 개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 개정 현황을 첨부의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6.30.)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